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19가단51484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임부영, 이상동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4. 13.

판 결 선 고 2021. 7.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29,034원과 그 중 10,047,973원에 대하여 2019. 6. 17.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B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따라 부담하는 원리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한도 14,250,000원, 보증기간 2017. 9. 27.부터 2022. 9. 2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권리보전비용 등과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9. 4. 1.경 피고가 소외 은행에 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6. 17. 소외 은행에 10,047,973원(= 원금 9,953,555원 + 이자 114,41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권리보전비용은 181,061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인정근거】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229,034원(= 대위변제금 10,047,973원 + 권리보전비용 181,061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10,047,97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7.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